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민관심행사 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인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하여는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가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6조제2항·제5항 및 제8항 등).
- 방송통신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하며, 방송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계방송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6조제3항).
-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실시간 중계 미포함 행위와 중계방송권 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함(안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 중계방송권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4).
-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6 신설 및 제108조제1항).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폐지함(안 제90조의2 삭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중대한 국민

관심행사”의 실시간 중계 및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폐지 관련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II. 검토의견

1.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실시간 중계 관련(안 제76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등)

○ 안 제76조제5항은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들에게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포함)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이 누구든지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76조제3항은 “중계방송권자등”의 범위에 현행법에 따른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더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계방송권이 없는 사업자¹⁾도 중계방송권자등에 포함됨에 따라 중계방송권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 및 개정안의 의무 규정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예를 들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방송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 등이 있음.

- 둘째,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4(중계방송권 등에 대한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6(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및 보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중계방송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 행사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면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기존 계약 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체결 중계방송권 계약의 현황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제한된 범위의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사건법률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또한 이미 체결된 중계방송권 계약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및 그에 따른 신뢰보호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 관련(안 제76조제4항 등)

- 현행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는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안 제76조제4항에서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는 한편, 안 제76조의3제1항제1호

에서는 해당 정의에 따른 보편적 방송수단에 현행법상 가구 비율 요건을 별도로 부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제76조의3제1항제2호의 “보편적 방송수단”에는 현행과 달리 제1호의 가구 비율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2호의 “보편적 방송수단”을 “제1호에 따른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

3. 그 외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보편적 방송수단”이 안 제76조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안 제76조의3에서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76조제4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III. 관계 기관 의견

- 법무부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첫째, 현행 규정의 “방송사업자” 중 일부만 “방송통신사업자”로 바뀌어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부는 방송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

관련 검토가 필요함.²⁾

- 둘째, 개정안은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³⁾ 및 그 대리인을 “중계방송권자등”으로 약칭하는데, 여기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중계방송권자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별로 규율 범위 관련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안 부칙 제2조는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의무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문위원 윤 상 열)

2) 법무부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통신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는 국민관심 행사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면서도(제76조제3항 및 제5항, 제76조의3, 제76조의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정하여 고시할 때의 의견 청취(제76조제2항)에서는 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